

해남 남외리 정하 에코프라임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44-0406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전라남도 해남군 거주자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12.26(금)	2026.01.05.(월)	2026.01.06.(화)	2026.01.07.(수)	2026.01.13.(화)	2026.01.16.(금)~ 2026.01.18.(일)	2026.01.26.(월)~ 2026.01.28.(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n-jungha.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준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12.26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O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2.26.(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해남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해남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1.05.(월)	26.01.06.(화)	26.01.07.(수)	26.01.13.(화)	26.01.16.(금)~ 26.01.18.(일)	26.01.26.(월)~ 26.01.28.(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464-1)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전라남도 해남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해남군 건축허가과-59498호(2025. 12. 2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41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3~18층 6개동 총 305세대**

[특별공급 173세대(기관추천 32세대, 다자녀가구 32세대, 신혼부부 71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 생애최초 2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내진설계에 관한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VII-0.203g (MMI등급)입니다.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624	01	084.9559A	84A	84.9559	25.7977	110.7536	45.4129	156.1665	52.8110	272	28	28	63	9	25	153	119	17
	02	084.9459B	84B	84.9459	26.4803	111.4262	45.4077	156.8339	52.8048	33	4	4	8	1	3	20	13	2
합 계										305	32	32	71	10	28	173	132	19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84.9559A	084.9459B	비고
약식표기(타입)	84A	84B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6	1
	장기복무 제대군인	5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5	1
	장애인	4	-
		3	-
	중소기업 근로자	5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8	4
신혼부부 특별공급		63	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	1
생애최초 특별공급		25	3
합 계		153	20
			173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 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타입)	층	공급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건축비	대지비	합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084.9559A (84A)	1층	12	306,500,000	60,500,000	367,0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110,100,000
	2층	17	309,500,000	60,500,000	370,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111,000,000
	3층	17	312,500,000	60,500,000	373,0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37,300,000	111,900,000
	4층	17	316,500,000	60,500,000	377,0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113,100,000
	5층이상	209	320,500,000	60,500,000	381,0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114,300,000
084.9459B (84B)	1층	1	295,510,000	61,490,000	357,0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107,100,000
	2층	2	297,510,000	61,490,000	359,0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107,700,000
	3층	2	300,510,000	61,490,000	362,0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36,200,000	108,600,000
	4층	2	304,510,000	61,490,000	366,0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36,600,000	109,800,000
	5층이상	26	308,510,000	61,490,000	370,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111,000,000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2)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2)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2 \times 0.3025$ 또는 $m^2 \div 3.3058$)

※ 상기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고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1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시행사가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균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균린상가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

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자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에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공부정리를 이유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시 공유대지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으며,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정산하지 않습니다.
- 균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 등은 별도 분양대상으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 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단, 동별 사용승인검사를 득하고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 한 경우는 입주 전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만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대출이자는 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입주예정자의 임의 요청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유형 및 순위별로 접수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있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 colspan="2">처리방법</th></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 <td rowspan="3">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 <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장애인 : 전라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남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라남도 해남군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 ■ ②배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배점항목</th> <th rowspan="2">총배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준</th> <th>접수</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접수	계	100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접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전라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7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남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전라남도 해남군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 <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 </tbody> </table>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라남도 해남군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2.2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 10,087,437원	8,578,089원 ~ 12,009,323원	9,031,049원 ~ 12,643,467원	9,733,087원 ~ 13,626,320원	10,435,125원 ~ 14,609,174원	11,137,163원 ~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 11,528,499원	10,293,707원 ~ 13,724,941원	10,837,259원 ~ 14,449,677원	11,679,704원 ~ 15,572,938원	12,522,150원 ~ 16,696,198원	13,364,595원 ~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	12,009,324원 ~	12,643,468원 ~	13,626,321원 ~	14,609,175원 ~	15,592,028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건축물	건축물 종류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주택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head> <tbody> <tr> <td>주택</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 <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 <td>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남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라남도 해남군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p>■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2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남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p>※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p>■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혼인자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단,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p>■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p>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p> <p>*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p> <p>**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p> <p>■ ①소득구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style="text-align: center;">단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소득구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일반공급 (5%)</td> <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우선공급 (35%)</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공급 (15%)</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첨공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라남도 해남군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p>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비고	<p>■ 자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p>■ 소득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2.2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h>주택</th> <th>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h>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head> <tbody> <tr> <td></td>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남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해남군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비고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일정 및 당첨자 발표 안내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 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6.01.05. (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사업주체 견본주택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464-1)
일반공급	1순위	2026.01.06. (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5.01.07. (수)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p>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입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1.13.(화) ~ 2026.01.22(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6.01.13.(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 및 자격검수 일정

구분	입주대상 자격검증 확인 서류제출 기간	대상자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서류 제출	2026.01.16.(금) ~ 2026.01.18.(일) 10:00 ~ 16:30 까지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특별공급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해남 남외리 정하에코프라임 견본주택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464-1)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자격검증 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한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당첨자 자격검증 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 확인 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첨자 자격검증 확인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 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검증 확인 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않을 시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공통서류와 특별공급, 일반공급 유형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비치
	O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주택공급 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 가능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 발급
	<input type="radio"/>	출입국사실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대상자 제외
	<input type="radio"/>	청약통장순위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
	<input type="radio"/>	기준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복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input type="radio"/>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연락처, 직인날인 원본)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input type="radi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input type="radio"/>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 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팩스 및 복사본 접수 불가)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input type="radio"/>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또는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input type="ra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연락처, 직인날인 원본)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input type="radio"/>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input type="radio"/>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표3]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input type="radio"/>	출입국사실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출입국사실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청약신청자 본인) 참조 	
	<input type="radi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input type="radio"/>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팩스 및 복사본 접수 불가) 	
	<input type="radio"/>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input type="radio"/>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표3]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input type="radio"/>	임신진단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연락처, 직인날인 원본)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직계비속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가점제 추가서류)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input type="radio"/>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input type="radio"/>	당첨사실 확인서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증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input type="radio"/>	출입국사실증명원			
	<input type="radi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input type="radi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증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당첨사실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관할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input type="radi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input type="radio"/>	비자발급 내역 및			
	<input type="radio"/>	청약자 및			

		재학증명서 등	세대원	※ 비자 발급 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 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손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특별공급 신청 당일 견본주택 내 접수(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한 공급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계속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③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소득금액증명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사) ②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공고일 이전) 등 소득입증서류를	①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기차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부가기차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 계속적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①과 ②를 모두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근로기간으로 나뉘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①,②,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등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4.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서 (소득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정부24 ※ 세무소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관할구역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 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을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

(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 기본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및 세무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p>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 ②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의 결정세액과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 ④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p>	해당직장 및 세무서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내역(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p>① 근로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②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상기서류로 결정세액 납부 및 환급 내역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일 경우 : * 일반,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서 (단, 금액이 – 또는 0일 경우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불인정)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④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지급조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p>	해당직장 및 세무서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6, 2018, 2019, 2021, 2024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이 안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에게서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여부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p>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p>	①, ②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③ 위택스(www.wetax.co.kr),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p>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주택과 토지의 경우,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 가능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소유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 인쇄·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인쇄·제출</p>	①, ② 행정복지센터 / 일사편리(kras.go.kr) ③ 서울시 - 이택스(etax.go.kr) 서울 외 - 위택스(www.wetax.co.kr)
	해당자 <p>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p>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④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정부24 ② 위택스(www.wetax.co.kr),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

1.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화면 캡처본 출력 후 제출 (단, 공동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당 화면을 구현하여야 인정됨)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해당 시청, 구청,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ol style="list-style-type: none">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기간 (정당 당첨자) : **2026.01.26.(월) ~ 2026.01.28.(수)** [3 일간 / 시간 : 10:00 ~ 16:00]
- 계약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464-1) ☎ 1544-0406**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 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시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됨.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아파트 계약금 10%, 발코니 확장 계약금 10% 등을 당첨자가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 아파트+발코니 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사업주체가 부담하여 구매한 인지세 종이 문서는 잔금납부 이후 입주 시 계약자에게 지급 예정 	
	○	추가 개별통지 서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본인 외 모두)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단,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위임장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할 경우,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발급용에 한합니다.(대리인 발급용 접수불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인 이외(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수입인지 구매금액 – 아파트+발코니 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의 1/2을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균등 분담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총 금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계약자부담 (50%)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구매 절차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 정보 입력(인지세 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 선택 / 1건) → 테스트 출력 → 결제(계좌이체 or 신용카드) → 출력※ 주의사항 :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 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추가 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광주은행	1107 - 021 - 906079	코리아신탁(주)(주택도시보증공사광주전남지사)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 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2동 1001호 홍길동 → 1021001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함)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일(계약금, 잔금)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만일, 분양대금을 과오납 할 경우, 사업주체로 환불신청서(사업주체 양식)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의 PF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자금관리자인 코리아신탁(주)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수납계좌가 변경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툴 수 없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 제한사항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제외) 등
-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플러스옵션 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합니다. 이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53조)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제외)
 - 3)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① 단, 부적격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②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자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 중도금 납부 및 대출 알선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자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금액을 본인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 하여야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대출 신청건에 한하여 중도금 대출 이자는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해 주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자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일부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 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필요시 계약금대출 포함)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해지 시 사업주체가 대납한 대출이자 등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랐다.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 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선납할인 안내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약 45일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전일 까지만 적용됩니다. 단, 기 납입한 선납 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합니다)
- 입주지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균린생활시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9

발코니 확장 계약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비 고
		계약시	2026.11.19	입주지정일	
84A	10,000,000원	1,000,000원	5,000,000원	4,000,000원	
84B	8,000,000원	800,000원	4,000,000원	3,200,000원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계약금/잔금	광주은행	1107 - 021 - 906079	코리아신탁(주) (주택도시보증공사광주전남지사)	입금 시 비고란에 동 호, 성명 필히 기재 요망 (예 : 102동 503호 홍길동 → 1020503홍길동)

- 발코니 확장 대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 1001호 홍길동→'1011001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시 환불이 가능함)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납부계좌가 동일하오니 반드시 확인하고 이체 바라며,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착오 입금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추가선택품목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의 PF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자금관리자인 코리아신탁(주)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수납계좌가 변경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툴 수 없다.
- 당 현장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비확장형 선택이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 된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은 일괄 확장을 전제하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 하며, 자재발주 및 시공상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생상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세탁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세탁배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비선택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합니다.
-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대피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이 설치되면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무상제공 추가선택품목

1. 무상제공 추가선택대상

대상	구분	설치구분	비고
84A	선택형 1	침실1/침실2 분리형	불박이장 1개(침실1) 시공 각 침실별 천정시스템에어컨 개별 설치
	선택형 2	침실1+침실2 통합형	불박이장 1개(분리형과 동일형태의 가구제공) 천정시스템에어컨 2대 설치(분리형과 동일 위치에 설치) 분리벽체에 설치예정인 콘센트 위치 변경

- 상기 별도계약 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이미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성능 개선, 디자인 개선, 단종 등), 특허권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동급 수준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힌지, 레일,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도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옵션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없는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스템 에어컨

타입	수량	설치위치	설치모델명 (제조사:LG전자)		비고
			실외기	실내기	
전타입	실외기 1대 + 실내기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RPUQ0403S2R	RNW0720C2WP(거실) RNW0230C2WP(안방) RNW0200C2WP(침실1,침실2)	와이파이가능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유니트에는 전시용품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설치위치 및 수량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디자인 및 사이즈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통합형 옵션선택시 침실 1,2가 통합되어 확장기본형과 동일하게 실내기가 설치되며, 설치위치 또한 동일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무상제공함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며, 설치된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에어컨 운전 시 실외기의 이물질로 인한 오염 및 작동에 방해물의 여부를 확인 후 운전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의 문제 발생 시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 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크기는 본공사 시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과 안방 벽면에 벽부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박스, 냉매매립 배관 및 에어컨용 전기콘센트 설치는 제외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천장형 냉매 배관이 설치되며,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기구 위치 및 기타 시공 여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모델은 IOT와 호환이 되지 않으니 계약 전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은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방가전 및 기타품목

1) 주방가전

타입	품 목	제조사명	제품명	비고
전타입	빌트인 인덕션	LG	BEI3QEBCOE	
	빌트인 전기오븐	LG	MZ385EBT1	

2) 기타품목

타입	품 목	제품명	설치위치	비고
전타입	주방마감재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상판 + 벽체일부	
84A	중문	원슬라이딩 도어(수동일반형)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일반형)	현관 안방드레스룸	
		주방 장식장	주방	
	가구	불박이장	침실1	
84B	중문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일반형)	현관	
	가구	불박이장	침실1/침실2	

3) 주방가전 및 기타품목 유의사항

- 상기 제품의 모델은 설치 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 (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 시 동 제조사의 동급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 시 동급 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

도의 동의서는 징구 하지 않음)

-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전세대 인덕션 방식의 전기쿡탑이 설치되며, 세대 내 가스배관은 가스보일러 사용을 위한 용도로만 설치되며, 취사용 가스배관은 주방에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판에 가스배관용 원형 타공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전기쿡탑 사용 시 인덕션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조리 용기에 인덕션용 표시가 있더라도 도자기질 재질 또는 자성이 약한 용기의 경우 조리가 되지 않거나 전기쿡탑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가스쿡탑 사용 시에는 가스계량기에서 가스쿡탑까지 연결되는 가스배관 공사를 입주민 부담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렌지후드 인근 상부장에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조작부가 렌지후드에 노출 부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오븐의 설치위치는 인덕션 하단에 설치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주방상판 및 벽체)은 자재 특성상 시공이음매가 노출되며, 나누기 및 이음매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이 견본주택에 설치제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성능을 포함하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을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의 틈으로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의 개폐 방향은 세대의 단지 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강화유리로 시공되나, 물리적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규격, 하드웨어 사양, 컬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세대별 또는 타입별 개폐방향, 설치크기, 규격 및 하드웨어등이 상이합니다.
- 현관 중문의 모델 및 사양, 디자인, 제조사 등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 또는 동급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안내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및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내 용
공 통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법= 형별면적m²) ×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청약 및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아파트 명칭은 '해남 남외리 정하 에코프라임 공동주택'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펫네임 등을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분양홍보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

- 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지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지도,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면에 명기되는 면적, 치수 등은 실제 시공과정에서 일부 경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층간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사업 부지면적 등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 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단지 내 대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되, 위치의 지정이나 분할을 요구하지 않으며, 시설에 따라서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예정 임)의 다른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 수익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세대별 면적분할이나 위치지정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경계 및 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주지연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에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의2(2017.10.19 시행)에 따른 표시(「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표시) -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0.207g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에 대한 금원 확보와 금액 관리는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 진행 중 샘플하우스로 이용 및 관람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당사에서 임의로 선정하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예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일부 세대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본 아파트 건축(변경)허가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징구)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영리 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퇴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은 2025년 05월 09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으로(최초 승인번호 2025-건축허가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일부 규정은 최초 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 및 흙막이 등의 가시설 공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 면적, 녹지면적 등은 일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제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단지명,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명칭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조경석쌓기, 펜스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토목 및 건축옹벽, 난간, 펜스 등의 위치는 대지경계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인접대지와의 높이 차이 등으로 대지경계선

	<p>에서 단지측으로 이격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동,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단지 외부시설물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설계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위치 및 면적, 개소, 형태 등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없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관청의 인·허가 조건[사업시행(변경)인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전문위원회심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 협의결과 조건, 관계기관 심의결과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단지 내 조경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 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6조 4항에 따라 모든 세대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한 대피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경계 바깥의 도로,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인근 공동주택·주택·상가 및 기타 협오시설 등은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 등이 감소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존치건물 등이 인접하여 주변 소음, 먼지, 분진, 조망권, 세대간섭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불편과 준공 시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외부 기부채납시설, 공원계획, 도로계획 및 도로관련 시설물 등은 별도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 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부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 사업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해 있으므로 빈번한 차량통행에 의한 도로 혼잡 및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레 조정 등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위의 개발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아파트 입주시점의 초, 중, 고등학교 배정은 관할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학교배정 및 통학거리 등은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p>※ 청약 및 계약 전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단지여건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일부 구간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관 저하, 소음, 생활 편의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휴게공간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수종, 테마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 및 단지 내의 경사로, 단차 처리방안, 조경 계획 등은 본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쌓기, 산벽쌓기,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시공방법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상층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선 위치는 담당 인·허가청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 및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로 진입하는 비상차량 동선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차공간의 바닥마감 및 레벨 등은 인·허가청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입주자 차량외 지상으로 진입 가능한 차량은 소방, 치안, 이사, 우편(택배), 폐기물 수거차량 등 입주민 공공이익과 관련된 차량만 진입이 가능하며 개별 사유로 지상에 차량 진입이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실과 협의하여 진입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 도로와 단지 내 도로와의 인접 또는 레벨차이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부대시설물(쓰레기분리수거장, 재활용품보관소, D/A(환기구), 자전거보관소, 주차장 램프 지붕 등) 등은 위치,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동별 위치 및 이동거리는 상이합니다.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제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경사로 및 지하 또는 지상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훈룸 등은 본공사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기계·전기실, 환기창, D/A(환기구) 등)과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이 주거동의 전·후·측면 등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 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 도서기준으로 시공되며, 본공사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주동 및 부대시설 주변에는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등이 설치되며, 저층세대 밸코니 전·후면 하부에 훈룸, D/A(환기구)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어,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위치는 설계도서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 비주거 부분의 옥상 또는 인근 동 주변, 1층 필로티 공간 등에 급배기, 환기휀,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동 및 부대복리시설동(관리사무소, 부대복리시설) : 102동 배면 인접 - 어린이놀이터 : 103동~104동 정면 위치 - 지상주차장 : 101동 배면, 102동 정면, 103동 일부정면, 104동~105동 배면, 105동~106동 사이 위치 - 주민운동시설-1 : 104동 정면~106동 배면 사이 / 주민운동시설-2 : 104동 필로티 - 맘스스테이션 및 DropZone : 103동~104동 사이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 실외기 시설이 해당 시설의 옥상 또는 인근동 주변 및 동 1층 필로티 공간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이 아파트 공용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 옥상 또는 인근 동 주변,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101동, 102동, 103동 및 인접 동의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 간섭 및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비가림 시설 등의 건물 형태로 설치(급수 및 배수관 설치)하고, 총 5개소(재활용품보관소) 계획 됨.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각 동 저층의 경우 단지 내 보행로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조·채광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 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전기·통신시설물(공용·외부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물, 보도·차도 포장재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써,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서비스 등에 관한 책임 및 발생 비용 등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을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 운동시설 등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시설물 명칭, 위치, 크기 등도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에 게시되어 있는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청약,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각 동 외부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거리, 세대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2. 본 계약물건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시설, 놀이터, D/A(환기구), 천창,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산책로 및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등 단지内外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헨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헨룸, D/A(환기구)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냄새, 시선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 등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경비실은 차량 및 보행로 주출입구에 접하여 1개소가 설치되며, 부출입구를 통한 외부차량의 통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를 위한 드롭존이 계획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 드롭존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민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드롭 존은 삭제 또는 이동될 수 있음)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미술작품 등에 의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 시설물(출입구,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시설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야간조명,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블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의 쓰레기분리수거장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아파트용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 후 발생하는 제반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 보도에 아파트용 한전인입 및 통신인입을 위한 전신주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위치이동 및 설계변경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부에 전기차충전설비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전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위치이동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정화조는 외부엘리베이터 하부 인근에 설치되며, 정화조 배기관은 지상에서 노출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미관,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정화조 및 관련시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동 옥탑과 측벽 BI 등에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반사 및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동별 일부 직각배치 또는 서로 마주보는 일부 세대는 사생활권(프라이버시 등)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단지 배치도 및 분양홍보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사양은 각 동의 코어별 최고 층수에 따라 인승 및 속도, 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필로티 출입구는 구조 및 천장 속 배관설치 높이 등에 따라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 동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및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불빛에 의해 조망권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간섭 받을 수 있습니다. 주동 출입구와 인접한 각 동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출입구 구조물로 인해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채광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대 인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운행으로 인한 진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도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동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용환경에 따라 진동, 소음,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해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 여건 등에 대해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층 엘리베이터 훌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습기가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이 발생되며, 가동에 따른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어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 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상부층 세대는 통행 등으로 의해 소음 발생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상부층은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각 동 엘레베이터는 MRL(기계실 없음)방식 엘리베이터로, 기계실이 없는 구조 특성상 엘레베이터 인접 세대에서는 운행시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작동에 의한 일부 저층세대의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일부 1층 세대 앞 조경구간에 관계기관(소방)의 요청에 따라 에어매트 설치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교목은 식재할 수 없으며, 사생활(프라이버시 등) 침해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붕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공용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태양광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명 및 빛의 산란,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기타시설로 자전거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 등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각 차량 출입구와 인접한 동의 저층부는 램프를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 및 출차경보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에 인접한 세대는 상가 옥상층 지붕 및 난간 등에 의하여 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공용홀 내 창호의 개수와 크기가 주동마다 상이하므로 채광 및 환기가 불리한 세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충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동별 지하PIT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세대로 전달 될 수 있음. 집수정 펌프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저층부 세대는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좌우대칭 및 세대현관 출입구 방향이 상이)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옥상층 및 외부 난간은 주택법 등의 관련 법규 높이 기준에 따라 투시형 철재난간 또는 폐쇄형 난간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아파트 옥상 및 측벽에 피뢰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외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별 외관 및 외부 창호의 형태, 재질, 크기, 색상 및 루버의 위치 및 크기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등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권장 사항 및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의 임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지 외관의 형태, 색채, 줄눈, 재료, 등 번호, 각종 사인, 옥외시설물 등은 관할관청협의, 브랜드 표현 등으로 실시공시 입주자 등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동 외벽 등에 부분 장식물, 조명 및 별도 마감재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동의 외벽에 부착되는 사인물, 장식물은 견본주택 모형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등),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옹벽, 석축,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본공사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조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 세대에 대한 지상 및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유효높이는 2.7m이상 확보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지하주차장 층별, 구간별 높이는 일부 상이할 수 있고, 본공사 시 각종 배관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높이 일부 구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출입구는 102동과 103동 사이, 부출입구는 101동 105동 사이, 주차 출입구는 101동 인근에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주차 출입구의 디자인 등은 분양모형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장애인주차 3.3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관련부서협의 시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계획상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의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으로 승하차 시 이용에 불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을 실로 사용하거나 면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는 공동주택용(부대복리시설용 등 포함), 근린생활시설용의 각종 배선, 배관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본공사 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충전 시 차량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근접 주차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 수량 및 사양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용 지상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용으로 공동주택의 주차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외리 정하 에코프라임 공동주택의 주차대수는 총 471대로, 아파트 주차는 469대(지상층:112대, 지하1층:357대)이며, 근린생활시설 주차는 2대(지상 층:2대)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및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내에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요금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지하 1층은 모든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공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단지 내에 지역정압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의 소음 및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동 하부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헨룸 또는 제연헨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헨룸 등은 본공사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발전기가 가동되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사업주체가 장래에 전기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본 아파트 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설치 및 부지 무상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지내 한전패드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위치이동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MDF실 및 방재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부 장비 및 서버는 시설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며,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및 전기요금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TPS(통신실)는 필요한 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법적 시설로서 그 위치 및 면적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등으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여 이동통신 설비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으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하며, 무인택배함의 설치위치는 지상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냉,난방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가 설치시 진동 및 소음, 미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위 세대	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것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기본 제공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청약 및 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실내 천장고는 거실기준 2.3m이며, 실외기 및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 현관의 천장고는 각각 상이합니다. • 본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세대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커튼박스 높이 및 창호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는 가스보일러 외에는 가스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가스쿡탑 및 가스오븐 등 가스 사용을 원하는 계약자는 입주 후 별도로 주방까지 가스 배관 작업을 계약자 책임하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을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인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침실등이 침실 중심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 • 침실1과 침실2 사이의 가변형 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이며,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 가변형 벽체(건식고정) 설치 또는 미설치의 선택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가변형 벽체 선택형 평면 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설치 개소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로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현관, 현관창고, 비화장발코니, 실외기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 창호 등은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형태 및 재질,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방화문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 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실외기실 외부면은 별도의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투시형난간이 설치됩니다. • 겨울철 밀폐된 생활 환경 속에서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화분, 빨래 등으로 인해 실내 상대 습도가 40~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창호 유리면 및 창틀 주변에 결露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므로, 주기적인 환기는 결로 현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비화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사이즈가 상이합니다. •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등의 천장에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의 천장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건조기(건조기 일체형 세탁기 포함) 설치 시 보일러 점검 및 교체에 따른 건조기 또는 세탁기의 이설 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

	<p>하여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현장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비확장형 선택이 불가합니다. 당 현장의 실외기실은 별도의 외부창 또는 루버창이 설치되지 않으며, 투시형난간이 설치됩니다.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배수구는 주기적인 점검 및 청소를 통해 배수가 원활하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구,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외리 정하 에코프라임 공동주택'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미건립세대 84B타입은 건립세대인 84A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탈로그 등)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견본주택은 추가선택품목을 반영하여 건립하였으며 기본형의 평면/마감재 등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시 홈페이지 및 분양자료, CG, 마감재리스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내 가구장 상부 물딩 형태 및 벽체마감은 본공사 시 마감 개선을 위해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수전 및 악세서리류의 위치는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입주 후 개별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는 중도금대출상환 및 분양, 옵션 잔금을 완납 후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어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수납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온수분 배기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음)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및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 및 거실벽의 인조대리석 마감시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신발장 및 불박이장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도배지, 천장지, 강마루 등) 침실과 욕실의 도어에 손끼임 방지가 제공(현관문, 주방 발코니문, 외부창호 제외)되며, 제품사양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의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 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경, 비틀림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의 욕실,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공간 단자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침 방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 등이 있을 수 있음) 주방상판은 제품 특성상 조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 및 나눔 부위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 도어, 발코니 도어 등)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포인트 타일 요철로 인해 줄눈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타일 나누기 및 단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아트월, 현관바닥, 욕실, 다용도실 바닥 등의 타일 나누기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실 아트월은 줄눈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거실 아트월 타일은 베인(분양)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음매가 연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실 가구는 각 평형별 크기가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또는 모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부 재료분리대 높이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철재 방화문으로 설치되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레바형태,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욕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외부에 시공되는 공장 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남외리 정하 에코프라임 공동주택'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 재포함)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호)을 준수하며 충간소음.진동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기·기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됩니다.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5항에 의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주방TV폰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일부노출되어 시공됩니다. 렌지후드 환기덕트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상부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후드 설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실외기실에는 냉매배관 및 드레인 등이 노출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동체감지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집니다. (1층,2층,최상층 – 거실/침실1,2/발코니1 각실별 1개소, 3층,4층,기준층 - 거실 1개소)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출입문 뒤편) 및 복도 중 한 곳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제어 스위치 기능 중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구용 간접 조명은 자체 ON/OFF 제어되며 일괄제어 스위치의 일괄소등 동작 시에는 연동하여 소등되지 않습니다. 에어컨 및 열교환기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유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 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선택품목(무상옵션) 선택(침실1,침실2 평면타입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위치 및 설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침실에 적용되는 전자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제어의 통합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제어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바닥배수구, 오수배관 입상, 수전금구류, 악세사리류, 위생도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홈네트워크 월패드 전화 수신 기능은 국선전화를 가입한 세대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욕실 내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 외부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급수급탕 분배기는 욕실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수, 급탕 분배기 설치부위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펜이 설치되며, 본공사 시 시공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호통 등을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세탁실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부세대 세탁배수 배관은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하부세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우오수 선호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마감재[분전반, 통신단자함,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주방TV폰 등]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명기구는 전열교환 환기ユニ트, 욕실 등 타 설비기구 등과 간접 시 조명기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실에는 전기/통신 통합형 수구가 설치되며,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소방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3~10층 구간에는 비확장발코니 또는 침실, 거실, 발코니 등 거주공간 내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세대 일부 발코니 (다용도실)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배관 및 연도가 노출되며, 실외기실에는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음 및 진동이 인접실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뜯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타	<p>부대복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로당,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로당,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천장 높이는 설비자재와의 간섭 등으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기본제공 품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등은 공간 및 기본 마감재만 제공되며, 내부 집기류, 운동기구 및 장비 등을 제외됩니다. 부대복리시설 등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 관리됩니다. 부대복리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등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제공되며, 마감재 및 기본 제공 품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등의 일부 공간은 입주시 A/S센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p>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단지내 지반층(지상1층) 부대시설 냉·난방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가 노출로 설치시 진동 및 소음, 미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외·옥상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홍보물(모형, CG 등)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과 외부도로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 출입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이용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01동·102동·103동 인근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의 간판은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승인권자와의 사전협의 후(지침준수 등) 설치하여야 함)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지붕층(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가 노출로 설치시 진동 및 소음, 미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 및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본공사 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관련 홈페이지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시점 및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전시품 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VR 동영상과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인테리어 소품가구, 전시용 가전제품, 연출용 조명 등) 등은 관람자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들이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모형의 문주 및 주차장 진입 상부 구조물, 주동 출입구,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부대복리시설 등은 본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 설치 위치, 형태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조명, 식재, 시설물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바닥마감패턴,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및 단지 레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 주택형이라도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제품 사양에 따라 좌우대칭 제품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청약(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으나,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공사 시 시공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추가선택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추가선택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 기준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주동 옥탑층 및 측벽의 층수 표기 사항은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주방TV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은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공사 시 KS조도 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공사 시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홍보물,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및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신고 및 승인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p>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온도조절기, 스위치,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고, 추후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없이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없는 타입의 조명기구는 타입에 따라 견본주택의 조명기구와 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본 시공 시 냉방전용(난방기능 없음)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가능하며, 전시된 제품의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되오니 옵션 계약시 확인바랍니다. • 견본주택 84A형에는 침실1 침실2 침실분리형 무상옵션선택상품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 선택형 평면 및 마감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공사 시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텐,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시 제외됩니다. • 단위세대 현관에 설치된 금속프레임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방화문틀과 방화문으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세대 난간의 개폐기능은 견본주택 피난을 위한 동선입니다. •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유상옵션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마감사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최소 소비효율기준 만족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 변압기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해당없음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공동주택 주차대수 469대, 근린생활시설 2대 총 471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
- 단지 내 주차장 계획이 동별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훈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지하주차장은 지하1,2층 두개층이며, 지하주차장 출입구 유효높이는 2.7m, 지하1층 주차장 차로의 유효높이는 2.7m로 설계되어 있으며, 실제 시공 시 유효천정고는 변경될 수 있음.
-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 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주)청화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주)천일이앤씨	(주)동남엠이씨	(주)하늘천
감리금액	1,000,657,000원	476,197,000원	94,651,999원	34,100,00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해남 남외리 정하에코프라임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5612025-101-0004400 호	일금 팔백육억오천육백팔십만원정 (₩80,656,800,000)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흠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2)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본 사업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자금보증서를 취득하여 주식회사 광주은행에서 대출 지원받은 사업장(350억원)으로, 해당대출은 입주시 입주자 명의로 대환될 수 있습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 관련 유의사항

1. 코리아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등)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매도인(사업주체)과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의 조약에 따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과 자금관리업무 모두 매도인(사업주체)에게 포괄승계되며 자금관리대리사무사의 업무는 종결, 면책됨을 확인합니다.
3.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납부하기로 합니다.
- 4."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5."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 (사업주체)가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 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7.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8.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매도인과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의 조약에 따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과 자금관리업무 모두 매도인에게 포괄승계되며 자금관리대리사무사의 업무는 종결, 면책됨을 확인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 공 사	비 고
상 호	정하에스테이트(주), 정하토건(주)	정하토건(주)	
주 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6, 2층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6, 2층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744-87-02720 / 211211-0030203 156-88-00669 / 201211-0011148	156-88-00669 / 201211-0011148	

■ 홈페이지 : hn-jungha.com

■ 견본주택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464-1

■ 분양문의 : ☎ 1544 - 0406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